#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186

발의연월일: 2024. 8. 26.

발 의 자:허 영·황정아·김현정

박 정・박정현・박용갑

위성곤 • 박성준 • 소병훈

전재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따로 그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요구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 자료 미제출 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간을 어긴 기관에는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사유서 제출, 기관 경고 등의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져 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공직 후보자와 인사청문회 위원들 간 자료 제출에 대한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 공직후보자를 포함시키고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만큼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자료 제출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공직후보자의 직 무 적합성, 청렴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자리인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2조의2).

#### 법률 제 호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조의2에 따라 심사 또는 인사청문의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때에는"을 "때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소명이 지연되어 기간이 연장된 때에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를 "공직후보자 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거나 제2항에 따른 소명을 마쳐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기관은"을 "공직후보자 또는 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를 "공직후보자 또는 기관이 제2항에 따른 소명없이 제3항의"로, "해당 기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다"를 "공직후보자 또는 해당 기관에 이를 경고하거나 위원회의 의결로 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할 수 있다"로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공직후보자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자료제출 지연 등에 따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의 기간 연장)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공직후보자나 해당 공직
후보자가 임명 또는 지명되어 소속될 기관이 위원회의 동의 없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자료 제출 또는 소명을 마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료
제출 또는 소명이 지연된 기간만큼 심사 또는 인사청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제출요구 및 심사·인사청문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9조, 제12조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 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 다. <단서 신설> -. 다만, 제12조의2에 따라 심 사 또는 인사청문의 기간이 연 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③ • 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위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 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 간은 3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 득이한 사유로 헌법재판소재판 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 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 -----때 또 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 는 제12조의2에 따라 자료 제 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출이나 소명이 지연되어 기간 이 연장된 때에는-----

### ② · ③ (생 략)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위원회는 제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 의 제출을 <u>국가기관·지방자치</u> 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 할 수 있다.

<신 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12조(자료제출요구)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u>기관에</u>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
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
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
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군사ㆍ
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국
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공직후
보자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③</u>
제출하거나 제2항에 따른 소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u>기관은</u>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사유서를 심사경과보고서 또는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를 경고할수있다.

<신 설>

을 마쳐야 한다.
<u>4</u>
공직후보
<u>자 또는 기관은</u>
<u> 5</u>
공직후보자 또는 기관이 제2항
에 따른 소명없이 제3항의
공직
후보자 또는 해당 기관에 이를
경고하거나 위원회의 의결로
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출석하
여 해명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의2(자료제출 지연 등에
따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의 기
간 연장)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공직후보
자나 해당 공직후보자가 임명
또는 지명되어 소속될 기관이

위원회의 동의 없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자료 제출 또는 소명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 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 료 제출 또는 소명이 지연된 기간만큼 심사 또는 인사청문 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